

행정법

해설 : 임병주 교수

(메가CST 공무원 행정법 전임교수)

1.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 ②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 ③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정답 ④

④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 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판 2002.12.10, 2001두3228). 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원칙적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 1999.7.22, 97헌바76). ②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화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판 1983.04.26, 81누423). ③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법령이 적용되므로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된 경우 구법 적용에 의한 면허취소를 하여야 한다(대판 1982.12.28, 82누1)

2.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 ㄴ.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 ㄷ.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ㄹ.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 ㅁ.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ㄴ. 환매권의 행사

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

- ① ㄱ, ㄴ, ㄷ, ㄴ ② ㄱ, ㄷ, ㅁ, ㄴ
- ③ ㄴ, ㄷ, ㅁ, ㄸ ④ ㄴ, ㅁ, ㄴ, ㄸ

■ 정답 ④

판례상 공법관계는 ㄴㄷㄹㄸ, 사법관계는 ㄱㄷㄹ

3. 행정상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안전처장 .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부령제정권을 가진다.
-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 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 ③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
- ④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 정답 ①

①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국무총리령을 통해 행정입법권을 발동하며 직접 부령제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니니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헌재 2006.12.28, 2006헌바59). ③④ 집행명령은 상위법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명령은 반드시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도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 ㄴ. 부하 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명령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 ㄷ. 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행정청 수 없게 되는 효력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라 한다.
- ㄹ.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당연히 내재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ㅁ.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해당한다.

-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ㄴ, ㅁ ④ ㄷ, ㄹ

■ 정답 ④

ㄱ[옳은 지문]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은 공무원수탁사인으로 자기 권한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ㄷ[옳은 지문] 부하 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명령은 내부관계에서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명령에 해당하여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㉔[틀린 지문]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라 한다.

㉕[틀린 지문]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은 아니고 법률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㉖[옳은 지문]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5.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권한은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항상 무효사유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명백성보충요건설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의 기준으로 중대성요건만을 요구하지만, 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명백성요건도 요구한다.

■ 정답 ①

① 무권한의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사실상공무원이론이나 무권대리에 관한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무효선언의미의 취소소송을 판례는 긍정하고 다만 취소소송의 요건은 구비해야 한다. ③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은 무효인 처분에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사유인 처분에만 인정된다. 무효인 처분은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6.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 등은 공포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위반이 된다.
- ④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 없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 정답③

③①행정절차법 제17조 6항, ② 행정절차법 제20조 3항, ④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채 침해적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1.4.13, 2000두3337).

7. 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 ③ 사실관계나 법적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존속이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된 경우
- ④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답 ②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철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철회로 인한 공익상의 목적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간의 이익형량상의 제한이나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붙는다. ①③ 행정행위 후 후발적 사유로 철회제한 사유가 아닌 철회할 수 있는 사유이다. ④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철회사유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철회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8.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상 시설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
- ② 공원매점에서 퇴거할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①

① 법률상 시설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것만으로 대집행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고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대집행이 가능하다(대판 1974.10.25, 74누122). ② 퇴거의무는 비대체적 의무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8.10.23, 97누157). ③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0.5.12, 99다18909). ④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의 위반도 의무위반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국가배상법」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 ②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③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 ④ 국가배상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나, 재판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 정답②

②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1항). ① 행정상 손해배상의 일반법적 지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이다. ③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국가배상법 제7조). ④ 옳은 지문

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자는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행정소송이 제3자 기관인 법원에 의해 심판되므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단하는데 대하여,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에서 자기통제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 ② 행정소송은 철저한 대심주의를 관철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에 한정하여서만 심리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행정심판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 중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행해지면 동일한 처분 등을 다루는 행정소송에 영향이 없지만,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 정답③

③ 행정소송은 전부취소나 일부취소의미의 소극적 변경만 허용되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재결도 가능하다. ① 행정심판도 행정심판의 대상되는 처분외의 사항을 심판할 수는 없다. ②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직권탐지와 직권증거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변론주의의 예외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 ④ 소송의 진행 중에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행해지면 상대방의 권리구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1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
- ② 제3자의 정당한 이익까지 희생시키면서 신뢰보호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 ③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 ④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견해표명이 있는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 정답④

④ 대판 1996.8.20, 95누10877 ① 대법원은 신의칙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신뢰보호의 상대방과 이익형량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③ 신뢰보호의 대상되는 선행조치는 적법한 선행조치 뿐만 아니라 위

법한 선행조치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다만 무효인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12. 다음은 「식품위생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79조(폐쇄조치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시물의 제거나 삭제
-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① 관계 공무원이 계고 등 사전조치 이후 행한 영업 표시물의 제거나 삭제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②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
- ③ 공무원이 적법하게 영업소의 간판을 제거하더라도 영업주에게 간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④ 위 「식품위생법」 제79조 제4항은 비례의 원칙 중에서 필요성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 정답 ④

④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봐서 비례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① 폐쇄명령 후 제거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 중 일환으로 봐야 하고 미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실효행사를 하는 즉시강제로 볼 수 없다. ② 게시문의 부착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부적합하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③ 적법한 영업소의 간판제거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를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정답 ③

③ 부담은 행정행위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행정행위의 효력



과 독립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부관으로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 불이행에 그치고 행정행위의 효력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자동적 소멸하는 해제조건이나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종기와 구별된다. ①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기속행위는 함부러 부관을 붙일 수 없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부관 중 부담은 부담만의 독립쟁송이나 독립취소가 가능하나 다른 부관은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전부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재량행위는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원칙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A구의 보건행정담당 공무원 甲이 관내 일반·휴게·계절음식점 업주에 대해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수권(授權)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 ② 위생지도의 상대방인 일반·휴게·계절음식점 업주가 甲의 위생지도에 불응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당해 업주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甲의 위생지도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지도에 속하지만 「행정절차법」상의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 ④ 甲의 위생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생지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과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 정답 ①

① 행정지도는 권고·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2항). ③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8조 1항). ④ 행정기관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의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51조).

15.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에 근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 ㄴ.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의 신고행위와 징수처분
- ㄷ.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 ㄹ.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 정답 ③

하자승계공정 ㉠㉡㉢, 하자승계부정 ㉣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다(대판 2006.09.08, 2005두14394).

16.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의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④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정답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이유제시의 생략사유이지 사전통지의 생략사유가 아니다.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바,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 정답 ①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18.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 ①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 ③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 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 ④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다.

■ 정답 ①

- ①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3.11.27, 2001다33789) ②④ 과실의 추정에 관한 학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관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0.5.12, 99다70600).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0. 6.9, 98두2621). ③ 행정심판법 제23조 1항

19. 판례에 따른 때,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
 ②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는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

■ 정답②

같은 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대판 1992.12.24, 92누3335). ①③④ 항고소송

20.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다.
 ③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 정답 ④

④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 6항). ① 행정심판법 제14조 ②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